##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60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박 정·이기헌·정진욱

김성원 • 허 영 • 김영환

박상혁 • 정동영 • 박지혜

정성호 · 김주영 · 윤후덕

김성회 · 김용태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을 호 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7조의2(대남방송으로 인한 피
	해주민 지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
	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
	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u>수 있다.</u>